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0.15.)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구본호]

목 차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7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5
7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8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66
9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1
10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9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8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1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19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배열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함.
(안 제3조~제10조)
 - ☞ 위원회 설치→기능→심의대상→구성→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위원장 직무→회의
- 나.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 위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단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10. ~ 8. 3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것임.
- 나. 또한,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28358호, '17.10.17.)됨에 따라
- 다. 우리군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라.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과 사업집행 용역으로 하되, 평가·자문·지도 및 사

업관리 업무는 1건당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
2. 국고 및 도비 보조 용역
3.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2국(局)을 설치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 나. 지역현안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담당관을 설치하고 과를 조정함.
- 다. 기구 조정
 - 1) 당초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 라. 정원 총수 조정
 - 1) 정원 총수 : 679명 ⇒ 702명(증 23)
 - 2) 집행기관 정원 : 665명 ⇒ 688명(증 23)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5급 정원 : 35명 ⇒ 38명(증 3)

가) 현행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나) 조정 : 38명(본청15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2)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608명 ⇒ 628명(증 20)

가) 현행 :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4조, 제120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169백만원 확보

다. 협의 : 전 부서 협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30. ~ 9. 18.

나) 예고결과 : 결과요약서 책자 참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책자 참조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8661호, 2018.2.20)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 1개 이상 3개 이하의 범위에서 국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 과 설치기준이 삭제됨.
- 나. 제43대 군수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설치하고,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별도 설치함.
- 다. 아울러 과 설치기준 삭제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고 인구정책, 도시재생, 치매안심센터, 창포원, 정수장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업무는 담당을 신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직제와 연관성이 있도록 부서 명칭과 직제를 조정함.
- 라. 조직개편 결과, 현행 2실 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개 읍면을 2국 1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개 읍면으로 개편하여 민선7기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마.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시대 자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여 핵심 및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 바.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77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장 시·군·구의 기구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

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

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병(傷病)상태를 관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

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정 전반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다.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 라. 군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법제·쟁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민원봉사실장

- 가. 창구민원과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 나.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과장

- 가.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각종행사 및 읍·면행정지도,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지방행정구역 조정, 선거, 주민등록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마. 행정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과장

- 가. 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
- 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무과장

- 가.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및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 나. 세출예산 집행·결산,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복식부기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세외수입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 및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6. 복지정책과

- 가. 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서비스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라.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마.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 바.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사항
- 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7. 안전총괄과장
 - 가.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나. 인적·물적·사회적 재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라. 민방위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CCTV관제에 관한 사항
- 8. 경제교통과장
 - 가.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다.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 9. 문화관광과장
 - 가.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사항
 - 나. 관광 및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항
 - 다. 수송대관광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0. 산림과장
 - 가. 산림사업 및 보호에 관한사항
 - 나. 산림자원 관리·이용 및 산지소득에 관한사항
 - 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임산물 생산, 화강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 11. 환경과장
 - 가. 환경관리 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건설과장
 - 가. 건설행정에 관한사항
 -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사항
 - 다. 하천에 관한 사항
 - 라.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 사항
- 13. 도시건축과장
 - 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사항

- 나. 자전거 개설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라. 건축사업 및 건축행정에 관한사항
- 마.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 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제4조 (삭제 2008.3.24.)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및 농업에 관한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제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업인 지원에 관한사항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사항
3. 축산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사항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사항
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6.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개선에 관한사항
7. 영농·학습단체 육성 지원 및 지도에 관한사항
8.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에 관한사항
9.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및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11. 식량작물,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 재배 및 기술지도에 관한사항
12. 농축산물의 유통시설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기농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14.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가공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19. 향노화산업에 관한 사항
20. 향노화작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수출에 관한 사항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사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4. 결핵, 한센병, 성병 등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평생교육센터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100-30에 둔다.

제12조(소장) 평생교육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수도사업소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5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8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절 거창사건사업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1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법 제4조의2에 따른 읍·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행정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6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나. 연가 사용 장려를 위하여 연가제한 사유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1) 지참 ⇒ 지각
 - 2)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 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방법 개선함.(안 제23조제11항)
 - 1) 분할 사용횟수 : 한 번 ⇒ 세 번
 -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10일 ⇒ 20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4. ~ 9.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은 삭제하고,

나.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연가사용 제한조항 수정 및 삭제, 공무원 임용 변화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확대 및 시행방법 개정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임.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제8조 삭제 <2017.7.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 장 근무시간 <삭제 2010.11.30>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삭제 2015.6.1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삭제 2015.6.10.)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6.1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7.7.12.)

⑨ (삭제 2006.8.14)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2)

현행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무료. 다만, 전자파일로 변환 시에는 기존 수수료 그대로 징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8. ~ 8. 2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 나.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14. 5. 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중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div>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현황

□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가. 제안이유

- 1)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은 어린이집, 장난감은행 등의 공공시설 운영으로 일일 상시 이용객이 200명 이상 되고, 회의실 대여에 따른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회의시에는 일일 500명 이상 사용하는 등 이용객수에 비해 주차공간(24면)이 턱없이 부족함.
- 2)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취득 개요

- 사업위치 : 거창읍 중앙리 333-1번지 일원
- 면 적 : 1,008m²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40면 이상)

2) 취득재산 세부내용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008	472,550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	대지	995	466,456	송 * 섭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5	대지	13	6,094	송 * 섭
매입	건물	거창읍 중앙리 333-1	-	585.6	184,590	송 * 섭

※ 기준가격 : 토지 - 공시지가(468,800원/m²) × 면적(m²), 건물 - 시가표준액

3) 추진경과

- 2018. 9. :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18. 9. : 토지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 2018. 9. : 공유재산심의회

4)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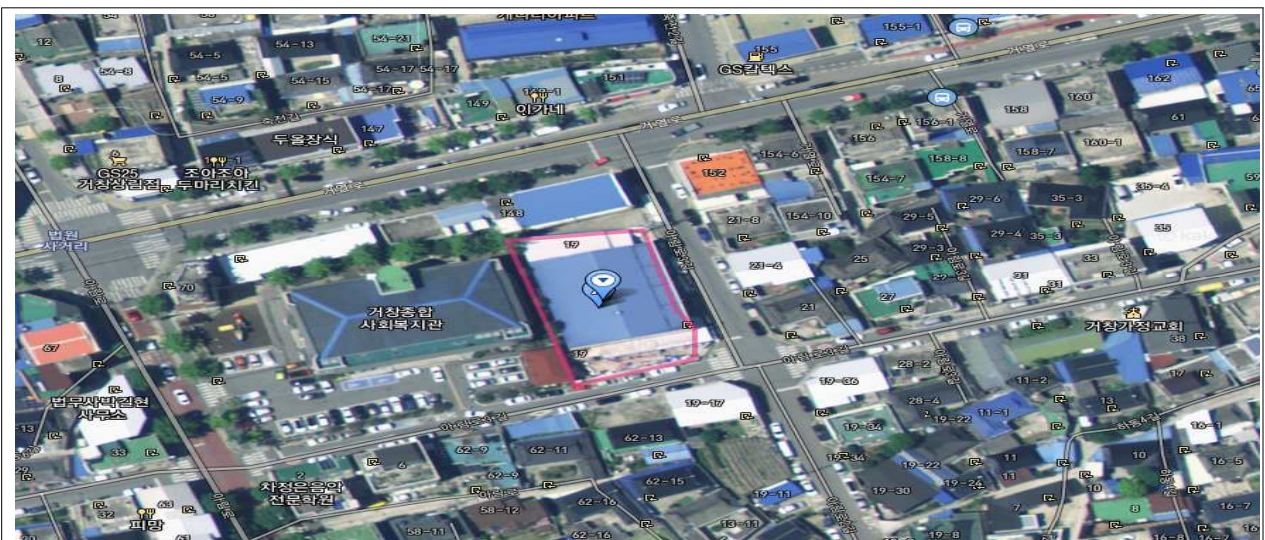
- 2018. 10. : 예산 편성 후 부지 매입
- 2019. 5. : 주차장설치사업 완료

5) 기대효과

- 부지 매입 및 주차장 확장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해소

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위치도



2) 현장사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각종 행사나 교육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주차능력 24대
- 다. 종합복지시설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 | |
|--------------|------------|---------|
| 1. 사업목적 및 용도 | 2. 사업기간 | 3. 소요예산 |
|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④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⑤ 민간위원 중 위원 1인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
-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전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⑨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제안이유

- 2019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나.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정성훈)
- 다. 사 업 비 : 4,012천원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3,700	4,012	4,012			4,012	

라.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4. 부서 의견

- 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나.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1
- 나.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 다.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6. 검토 의견

- 가. 해당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 나.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18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과견인력 제외)		36명 (10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 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4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8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이 ○ ○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권한대행)			2018. 2. 28. ~ 2019. 2. 27.		
	원 장	정 ○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8. 1. 17. ~ 2021. 1. 16.		
	이 사	최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하 ○ ○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이 ○ ○	충청북도 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고 ○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김 ○ ○	강원 강릉시 부시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박 ○ ○	인천 옹진군 부군수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강 ○ ○	광주 북구청 부구청장			2018. 2. 28. ~ 2019. 2. 27.		
	이 사	손 ○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 2. 28. ~ 2019. 2. 27.		
	감 사	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장 ○ ○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5,809 (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출연한 금 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795 (자산 총액)	
	예산액	8,406	9,986	13,313		부채	12,62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276	9,551	12,102		자본	11,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2				8,027		2,545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심의(안) 작성관련 참조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리 경영지원실장 원장 2018. 5. 29.

협조자 팀장

시행 경영지원실-1312 (2018. 5. 29.) 접수 재무과-13072 (2018. 5. 30.)

우 0678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한국지방세연구원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98 팩스번호 02-2071-2722 / monsy1@kilf.re.kr / 대국민 공개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046호(2018. 8. 01.)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8. 8.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9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대결 2018. 8. 2. 세정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세정과-8142 (2018. 8. 2.) 접수 재무과-18822 (2018. 8. 2.)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사립 / 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6 팩스번호 055-211-3719 / kmj2063@korea.kr / 비공개(5)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12. 29.)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중복 재 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설공원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함.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 나. 조례로 위임된 위임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다. 공설공원묘지의 설치와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별표 1)

- 라. 공설공원묘지 사용 대상자 명확히 규정함.(제3조)

(현행) 장묘시설 소재지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변경)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

공설공원묘지 소재지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 마.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감면 기준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별표 2)
- 바. 조례로 위임된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 기간 단축 시 15년, 20년, 25년 중의 기간에서 단축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사. 유골과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둠.(안 제7조, 별표 3)
- 아.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 위탁운영, 읍·면 위임사무 규정함.(안 제9조·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7. 10. ~ 7. 3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가. 국토의 잠식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묘지관리의 애로 등 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8개소의 공설공원묘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음.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됨에 따라 개정 내용인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신청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다. 하지만, 공설공원묘지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상공설공원묘지의 경우 1.1%, 월평공설공원묘지 2%, 가북공설공원묘지 3.83%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 라.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마.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장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16.1.29., 일부개정]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

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 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창군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묘시설”이란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공설공원묘지에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3. “공설일반묘지”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분묘의 형태), 봉안당(「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봉안탑(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 한다.
6. "평장"이란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설묘지의 구분) 거창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 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하기 위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면적) 장묘시설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 :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
2. 봉안묘·봉안당 : 안치단 1개
3. 평장·자연장지 : 5제곱미터 이내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군수가 정한 지역 거주자
5.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자
6.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제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묘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개장 시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분묘의 설치 및 봉안시설 안치 등) ①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안치 시에도 또한 같다.

③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분묘의 관리)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설공원묘지 : 군수
2. 공설일반묘지 : 사용자

제16조의2(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봉안시설 안치 이후 연고자의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지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운영위탁에 관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장묘시설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묘시설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9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 경비 등을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권한 위임) 군수는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
-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21. ~ 7.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4)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5. 검토의견

가. 정책이나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적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는 것임.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제정이유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 ↳ 수급자·한부모가족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나. 급식지원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 단체급식, 음식점을 통한 급식,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

다. 급식지원 신청절차,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등을 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마. 위생·안전 교육 등을 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553백만원 확보

다. 협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6. 22. ~ 7. 1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책자 참조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나.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2017.4.20)」에 기초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율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요구이유

-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다. 규 모 : 대지 15,057m³, 건축면적 2,206.3m², 연면적 5,508.99m²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m², 장애인복지관 2,499.68m²
-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위탁기간 : 2019.1.1. ~ 2023.12.31.(5년)

사.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자.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지원

4. 관련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에 걸쳐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나. 향후계획

- 2018. 10. 22. ~ 11. 5. : 수탁자 모집 공고
- 2018. 11. 6. ~ 11. 12.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11. 13. ~ 11. 16.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9. ~ 11. 23.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2월 중순 : 거창군 삶의 쉼터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하순 : 수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다. 예산조치 : 2018년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계상함

라.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나.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설치한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하여 말함.

다. 우리군에서도 장애인근로사업장, 월성청소년수련원, 문화원, 전수관, 서북부경남거점APC산지유통센터, 천적생태과학관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따라서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위탁하게 함으로써 사회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수탁자 선정관련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I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운영)

II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규모 : 부지 15,057㎡ 연면적 : 5,508.99㎡(지하 1층, 지상 3층)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 장애인복지관 : 2,499,68㎡
- 직원편제 : 29명(노인·여성복지관 11명, 장애인복지관 18명)

III 시설연혁

- 시설착공 : 2005. 10. 11
- 시설준공 : 2008. 1. 9
- 시설개관 : 2008. 6. 26
- 위·수탁개요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최초위탁 : 2008. 2. 19 ~ 2011. 2. 18(3년)
 - 1차재위탁 : 2011. 2. 19 ~ 2014. 2. 18(3년)
 - 2차재위탁 : 2014. 2. 19 ~ 2018. 12. 31(5년)

IV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

V 위탁개요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위탁기간 : 5년(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삶의 쉼터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관리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수탁법인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심의위원 : 9명(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 선정기준 :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평가결과(평가한 경우),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평가항목, 세부항목 별도 작성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 예산집행 및 자부담 약정
 - 위탁계약 시 법인 전입금 예산액의 1%정도 부담
 - 위탁운영 체결 후 자체운영규정(채용, 회계,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승인

IV 향후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8. 10. 18.(목)까지
- 모집공고 : 2018. 10. 22.(월) ~ 11. 5.(월)
- 접 수 : 2018. 11. 6(화) ~ 11. 12.(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3.(화) ~ 11. 16.(금)
 - 구성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9명 이내로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구성)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1. 19.(월) ~ 11. 23.(금)
 - 심의내용 : 공모에 응모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심사
- 위·수탁협약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중
-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 ~ 2018. 12월 말

●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요구이유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관련법령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 또는 법인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10월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8. 10월 ~ 11월 중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11월 중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다.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라.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음.

나. 2018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여성인구수는 32,211명이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322명으로 여성 인구대비 1%를 차지하고, 베트남 여성이 131명, 중국 70명, 캄보디아 39명, 필리핀 27명, 기타 55명 순임.

다. 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해당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업 및 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계획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이 2018. 12. 31.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I 위탁현황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 표	위 치	업 종	비고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김학두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농산물유통	

○ 위탁기간 : 2016. 3. 2. ~ 2018. 12. 31 / 2년 2개월

- 최초위탁 : 2011. 3. 2.
- 2015년 수탁기관 모집공고 : 현 수탁기관만 신청하여 재 위탁

○ 운영방법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을 채용, 근로임금 50%이내를 위탁금으로 보조,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과선별 작업	8명	9명	8명	

○ 위 탁 금 : 30,000천원 / 군비

II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접수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구성 : 인원 6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1인 포함
 - 심의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월중
 - 신청 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일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검토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III

행정사항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15. 예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1. 30.
- 협약서 공증 : 2018. 12. 3.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붙임 1]

거창군 공고 제2018 - 호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안)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위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여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2. 사업주체 : 거창군

3.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4. 신청자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을 가입 하는 관내 소재 업체 또는 법인(단체) 1개소

5. 위탁내용

가. 여성 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실 인원 5 ~ 10명

나. 여성 결혼이민자 채용 시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만원까지 지원
(월 급여 100만원 이하 시 임금의 50%지원)

다.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

(상호 협의 후 개별여건 감안하여 파트타임도 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11. 1. ~ 11. 5.

나. 제출서류 : 사무수탁신청서 1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등

다. 접 수 처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7. 사업자 선정·통보

가. 선정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득점기관 결정

나. 통보 : 개별통보

8. 기타

가.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의 결정에 따름

나. 접수 후 제출서류 변경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자격자로 처리되며, 위탁 후 발견 시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

거 창 군 수

[붙임 2]

거창군 사무수탁 신청서

사무명				
신청인	명칭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p>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창군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p> <p>거창군수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3]

거창군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1. 단체·법인 현황

가. 단체·법인명 :

나. 단체·법인 최초 설립일 :

다. 단체·법인 소재지 :

라. 단체·법인 설립 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목적

마. 단체·법인 대표자 현황

2. 단체·법인 내 주요 타사업 추진 현황 (해당사항이 있을 시)

가. 000 사업

－

－

나. 000 사업

－

－

3. 단체·법인 운영 시설 현황

-

4. 전년도 사업실적 (해당사항이 있을 시)

가. 작성기준

○ 채용인원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지출예산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나. 실적

○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번	예산액	운영비 지출 현황		
		지출		예산 사용 률 (지출 총액 대비 비율)
		내 용	금 액	
계				
1				
2				
3				

○ 채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세 이 하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64세	65세 ~
계								
필리핀								
베트남								
.....								

5. 추진 사업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로 참고)

가. 사업추진방법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대상 :
- 채용분야 :
- 홍보방법 :
- 채용계획 :

채 용 계 획(명)					월 급여 (4대보험 포함)
고용형태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근무시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 인건비 확보 및 지출 계획

나.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계획

-
-
-

다. 운영보조금 집행 계획

-
-
-

라. 기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자원 발굴계획

마. 사업 기대효과

-
-

바. 향후 계획

-
-
-

●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군수는 군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서비스 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등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함.(안 제2조)

☞ (현행) 실내체육관 ⇒ (변경) 거창군 체육관

나.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운영시간 변경함.(안 제6조)

☞ (현행) 오전 10시~오후 12시 ⇒ (변경) 오전 10시~오후 10시

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보완함.(안 제8조)

- 1)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인 체육행사를 사용허가 하도록 정비
- 2)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우선순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라. 정치나 종교의 목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제한규정 신설함.(안 제9조)

마. 관람수입의 사용료 납입 규정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 관람료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삭제함.

바. 사용료 감면조항 정비함.(안 제15조, 별표 2)

- 1) 법령 위임 없는 면제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2) 100분의 50 감면조항 신설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등

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 수영장 강습회원 강습비, 볼링장 사물함 사용료 별도

아.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업무 위임규정 신설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법령 재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30.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함

5. 검토의견

- 가. 각종 체육시설은 군민들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 나. 거창군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 우선 사용 규정을 제정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감면 규정을 신설, 사용료 면제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타 민간단체 행사 등과 비교할 때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임.
-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7. 7. 9. 자 97마1110 결정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01]

【판시사항】

[1] 공공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의 효력(유효)

[2] 체육시설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요율을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로 정한 서울특별시의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의 합리성 유무(유효)

【결정요지】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 **법제처의견 14-0151** 여주시 -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생략~

여주시 조례안 제5조제4항 전단의 허가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단순히 사용하려고 할 때에 여주시 조례 제9조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행사의 내용, 관람료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여주시 조례 제9조에 따른 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사용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 허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면 그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는 아니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연법」 등 공연 관련 법령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사용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 행사의 내용, 관람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허가에 대해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자치법제지원과-95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성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해제·해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일부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7. 1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4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생략)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생략)

나. 수의에 의한 방식 (생략)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

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 함

나. (생략)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10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전람·전시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탁구장,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②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대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대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입여성의 경우와 그 린카드 이용자에게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개정2015.9.23.)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 ②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및 운영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1조(삭제2015.9.23.)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위탁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 삭제2015.9.23.)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2.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다. 사 업 비 :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665	665	665			665	

- 라. 사업내용: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4. 부서 의견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1
- 나.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6. 검토 의견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나.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회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8.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명		17명		
임 원 (‘18.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6.10.31.~2018.10.30.	
	이사	이○○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이○○	아림노인요양원장			2017.12.20.~2019.12.19.	
	이사	송○○	前)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7.12.20.~2019.12.19.	
	이사	김○○	덕유농산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6.10.31.~2018.10.30.	
	이사	이○○	학원 운영			2018.01.03.~2018.10.30.	
	이사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08.22.~2020.08.21.	
	이사	양○○	前)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7.12.20.~2019.12.19.	
	이사	백○○	거창농산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송○○	거창군 이장자율협의회장			2018.08.22.~2019.12.19.	
	이사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7.12.20.~2019.12.19.	
	이사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7.12.20.~2019.12.19.	
	이사	백○○	前) 교장			2018.01.03.~2020.01.02.	
	감사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7.12.20.~2019.12.19.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7.12.20.~2019.12.19.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48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665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10,489 (자산 총액)
	예산액	11,830	11,083	11,122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00	665	665		자본	10,48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14			1,117		-103	